

속초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(안)

議案	
番號	128

提出年月日 : 92. 12.

提出者 : 東 寧 市 長

□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

- 소방법이 91.12.4 법률 제4419호로 개정되어 소방업무가 광역소방체제로 전환되어 소방법 제13조 내지 제17조, 제27조, 제67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 화재예방조례를 제정하여 92.9.22 강원도 조례 제2318호로 공포됨에 따라
- 현행 속초시화재예방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숙초시조례 제 호

숙초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(안)

숙초시화재예방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92년 9월 22일 부터 적용한다.